



의안번호	제42호
------	------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조배식의원 외 7명
발의연월일	2020. 5. 8.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제42호
--------------	------

발의연월일 : 2020. 5. 8.

대표발의자 : 조배식

공동발의자 : 김진호, 박승용,
이계천, 박영자,
서 원, 차경선,
최정숙

1. 제안이유

-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수수여부와 관련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진행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신고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토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20. 5. 27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외부강의시 사례금을 수수여부와 관련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것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의 시기를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도록 개정(안 제20조 제2항)
-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삭 제” (안 제20조 제3항)
-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삭 제” (안 제20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2020. 5. 8. ~ 5. 12.(5일간)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조배식의원 외 7인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신고”를 “서면으로 신고”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논산시의회 의원	조배식의원 외 7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p> <p>② 의원은 <u>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u>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u>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u></p> <p>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u>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u></p> <p>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p>	<p>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u> ----- <u>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u> ----- <u>서면으로 신고</u>-----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⑤ ----- -----</p>

현행	개정안
<p>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u>외부강의등을</u> 제한할 수 있다.</p> <p>⑥~⑧ “생략”</p> <p>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p> <p>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u>자문하여야 한다.</u></p>	<p>----- ----- <u>의원의 외부강의등을</u> -----.</p> <p>⑥~⑧ “현행과 같음”</p> <p>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자문할 수 있다.</u></p>

현 행

■ [별지 제8호서식] (제20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 기타() 자문, 의결
-------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일 괄 신 고	월(연)평균 횟수 : 회
	~ 20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 정 안

■ [별지 제8호서식]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 기타() 자문, 의결
-------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일 괄 신 고	월(연)평균 횟수 : 회
	~ 20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패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020. 4. 7공포, 2020. 5. 27시행)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

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삭제 <2020. 4. 7.>
-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 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